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농업인이 창출하고 유지합니다.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영농일지 포함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알리는 글

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시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2023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온라인
(비대면)으로 신청하고, 3월 2일부터 4월 28일 까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대면)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신청하였는지와 농업인이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에 농업인께서는 본 교재에 담겨있는 ①기본형 직불금 신청하기 ②준수사항
실천방법과 ③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여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공익직불제 알아보기

04

1차시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1.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06

2. 기본형 공익직불금 종류

08

2차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1. 한눈에 보는 준수사항

10

2. 준수사항 실천방법 알아보기

12

3차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1. 부정수급 사례 및 유형

20

2.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농업인 실천사항

22

공익직불제 물어보기

23

영농일지

26

공익직불금 자가진단표

35

공익직불제 알아보기

1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공익직불제

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 농업활동을 통해 먹거리 안전, 환경·생태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의 긍정적 기능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거리 안전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



농촌 공동체 유지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문화 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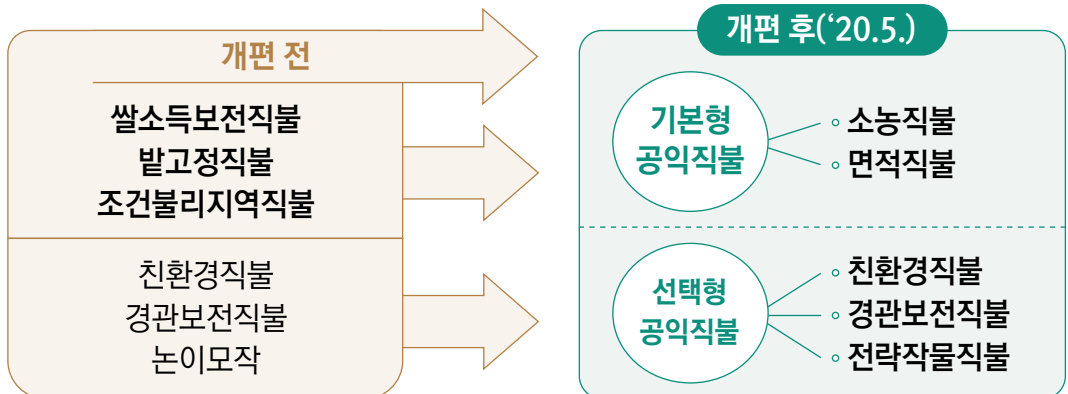


환경·생태 보전

국토 환경 및 자연경관 보전,
수자원 형성·함양, 토양유실·
홍수 방지, 생태계 보전

나. 공익직불제란?

- 농업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공익적 가치의 생산·유지·확대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공익직불 개편 전 2019년 농가·농업인 평균 109만원 지급, 개편 후 2020년은 203만원 지급(▲1.8배)

2 공익직불제의 기대효과는?

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나. 농업인의 소득안정

-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익직불금으로 소득을 보조합니다.



01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가. 지급대상 농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아래 기간 동안 쌀, 밭 또는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

* 쌀직불 : 1998~2000년, 밭직불: 2012~2014년, 조건불리직불 : 2003~2005년

** 위와 같은 직불 대상 농지라도 2017~20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였어야 하는 요건이 삭제(「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 '22.12.)되어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각지대를 해소함

※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농지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은 농지(주차장, 묘지, 창고 등)
-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
-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정당한 권원 없이 농사를 짓는 농지(국·공유지 무단점유 등)
-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개인이 임차하는 경우 등

나. 지급대상자

- **기존 수령자** 2016년~20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또는 2020년부터 기본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 **정책 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 대상자**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 (농업법인은 5ha) 이상을 경작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농업법인은 4,50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

신청전 주의사항 ▲

- ◎ 직불금 대상농지 중 폐경지는 제외하고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기
- ◎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는 신청하지 않기
- ◎ 임대차 농지는 계약사항을 농지대장에 등재 후 신청하기
-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전화(1644-8778), 인터넷(www.agrix.go.kr),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하여 변경하기

다. 직불금을 신청하면 안되는 농지(면적)

- ☑ 아래와 같이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농지 또는 면적분을 제외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폐경



콘크리트 포장 농로



묘지



농막



농지의 주차장 설치



간이저온저장고



농지의 건축물 설치



퇴비장

02

기본형 공익직불금 종류

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

-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 정액으로 120만원을 지급합니다.(농가당 1인에게만 지급)

※ 농가란 아래의 구성원을 포함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 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 주민등록표에는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① 배우자

②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③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다만, 혼인한 자녀는 제외)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각각의

- ① 농지 면적 합이 0.1~0.5ha 이하
- ②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 ③ 영농 종사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 ④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
- ⑤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시설 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 ⑥ 농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
- ⑦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미만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중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



나. 면적직불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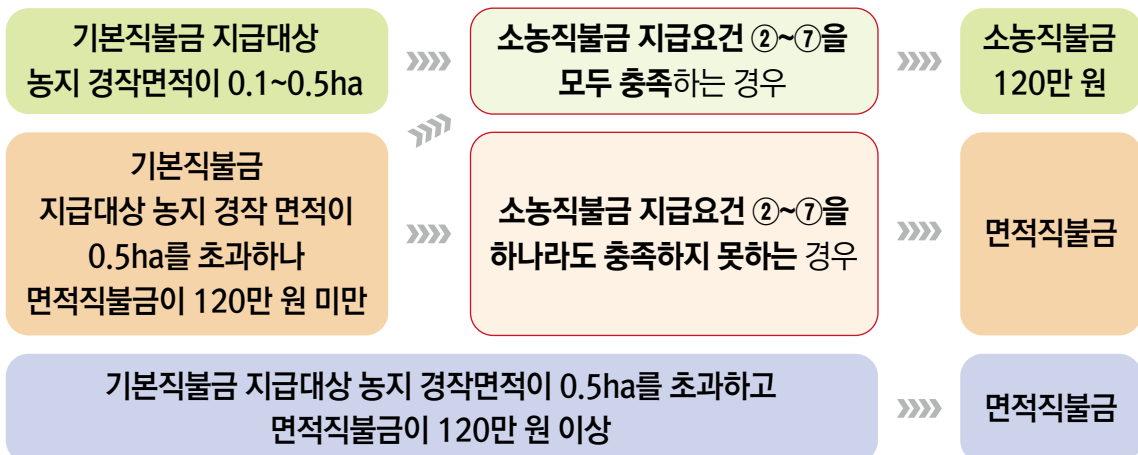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지급단가는 면적 구간별로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 초과~6ha 이하, 3구간 6ha 초과로 구분합니다.
- 최대 지급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까지이고, 논과 밭의 면적을 모두 합하여 산정합니다.

면적직불금 지급단가(ha 당)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2ha 이하(1구간)	205만원	178만원	134만원
2ha 초과 6ha 이하 (2구간)	197만원	170만원	117만원
6ha 초과(3구간)	189만원	162만원	1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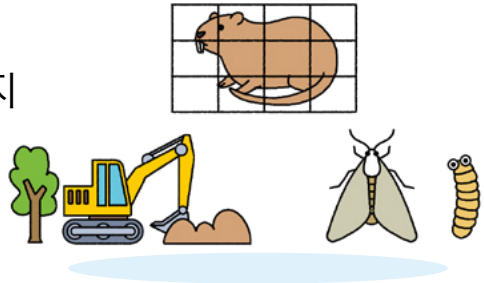
지급대상 농자·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면 어떤 직불금을 받게 될까요?



01 한눈에 보는 준수사항

생태계 보전(지속가능한 농업환경 구축)

1.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2. 생태계 교란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3.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먹거리 안전(안전·안심 먹거리 공급)

4.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5.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6.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공동체 활성화(농촌 공동체 활성화)

7. 마을 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8. 영농 폐기물의 적정 처리



영농활동 준수(경영체 역량 강화)

- 9.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 10.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 1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환경보호(물과 땅의 건강 회복)

- 12.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 13.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 14. 비료 적정 보관·관리
- 15.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배출금지
- 16.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 17.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각 준수사항 위반 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됩니다.

※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준수사항은 5% 감액

총 감액(지급제한) 비율



등록연도 기준 최대 100%까지 감액됩니다.

복수 위반



여러 건을 동시에 위반하면 각 감액률이 합산 적용됩니다.

반복 위반



전년도와 동일한 유형 2회 위반 시 20%가 감액됩니다. 3회 이후엔 40%가 감액됩니다.

예시

2022년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지 않아 10%가 감액되었고, 2023년 농지의 형상을 또 유지하지 않는 경우 20%가 감액됩니다.

02 준수사항 실천방법 알아보기

가. 생태계 보전 준수사항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 시 연간 1회 이상 경운해야 합니다.
- 이웃 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논농업) 농지 주변 용수로·배수로 등을 잘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 농지의 형상과 기능이 유지가 되지 않는 아래와 같은 사례의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생태계 교란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생물다양성법」 제24조

- 생태계 교란생물을 반입·사육·재배해서는 안 됩니다.
- **생태계 교란식물** : 가시박,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털물참새피, 갯줄풀 등
- **생태계 교란동물** : 뉴트리아, 큰입배스, 붉은귀거북속 전 종, 황소개구리, 붉은불개미 등



가시박



뉴트리아

[사진제공 : 국립생태원 공공누리 제1유형]

방제 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식물방역법」 제30조의2

- 농경지 및 그 주변에 규제병해충 또는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하면 신고(1833-8572, 농업기술센터)해야 합니다.



붉은 불개미



과수 화상병

[사진제공 : 검역본부, 농촌진흥청]

나. 먹거리 안전 준수사항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약관리법」 제23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식품위생법」 제7조

- 적용대상 농작물·병해충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 정해진 사용법과 사용량을 지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 적용대상 농작물에 대해 사용시기와 사용횟수가 정해진 농약은 이를 지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식품위생법」 제7조

- 농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할 때, 이산화황 등의 식품 첨가물은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 기타유해물질: 중금속, 식중독균, 곰팡이 독소 등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등

-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온 농산물에 대한 출하 제한 명령(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 준수사항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 마을 단위 자치회(이장 등)를 중심으로 농업환경의 보전, 농촌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기 위한 마을 공동체 공동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 영농폐기물 공동수거 처리, 마을 대청소, 경로잔치, 마을회의 참여, 마을가꾸기 등



마을 대청소



영농폐기물 공동수거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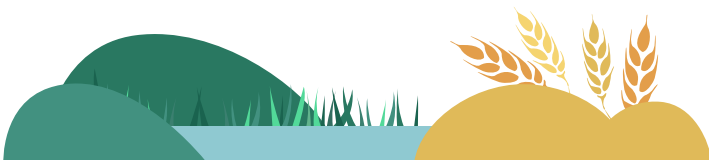


마을 가꾸기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 영농폐기물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매립하지 마시고, 마을 공동수거함에 보관하여 처리업체를 통해 수거·폐기 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라. 영농활동 준수사항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 영농기간 중 품목별 주요 농작업에 대해 영농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농약, 비료 등의 구입 영수증 등을 함께 보관하시면 영농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 작성방법 : 수기, 온라인 등 농업인에게서 편한 방법으로 기록이 가능합니다.
 - 수기 작성은 본 안내서 26쪽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온라인 영농일지는 ‘농업온 (www.agrion.kr)’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 기존에 활용하시는 영농일지가 있으신 경우 기존 양식을 활용하셔도 무관합니다.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 농업경영정보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14일 이내에 주소지 주변의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에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 농업경영정보 : 농업인(법인) 성명(명칭), 지번, 면적, 경영형태, 재배품목 등
 - 변경등록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접 방문·우편·팩스,
인터넷(www.agrix.go.kr), 콜센터 1644-8778(내선 1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매년 9월 30일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내용**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등의 역할, 공익직접지불제도 주요 내용과 준수사항 실천방법 등 포함

정규교육 (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

대상자 2023년 신규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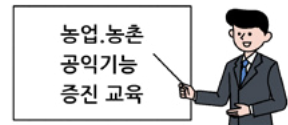
교육방법 대면: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지자체교육

온라인: 농업교육포털 (www.agriedu.net)에서 공익직불 교육 이수

간편교육(URL)

대상자 70세 미만 농업인(정규교육 대상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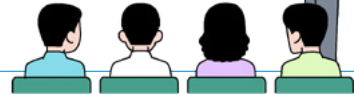
교육방법 직불신청 휴대전화 번호로 접속주소(URL) 발송



자동전화교육

대상자 70세 이상 농업인(정규교육 대상자 제외)

교육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화(1644-3656)가 오면 전화를 통해 교육 음원을 청취, 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 전화가 왔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번호 (1644-3656)로 직접 전화를 걸어 교육 음원 청취 가능



▲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농업교육포털에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마. 환경보호 준수사항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를 받은 경우, 발급받은 ‘비료사용 처방서’에 따라 토양에 맞는 양의 비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 토양검사를 받지 못했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하는 작물별 표준 시비량을 준수해야 합니다.
(흙토람, <http://soil.rda.go.kr>)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가축분뇨법」 제13조의2, 제17조

- 퇴비·액비화 기준에 적합한 퇴비·액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 살포지·살포량 등 액비 살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액비는 충분히 부숙시켜 악취를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 액비 살포 시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살포 후에는 경운하여 토양을 섞어줘야 합니다.



비료 적정 보관·관리

「비료관리법」 제19조의2

- 실내 또는 적정한 공간에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 비에 맞지 않도록 잘 봉합한 후에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 토양, 하천 등에 유출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배출 금지

「물환경보전법」 제15조, 「가축분뇨법」 제10조

- 농업용수로, 하수관로, 지하수로, 하천 등 공공수역에 농약, 가축분뇨 등을 배출·유출·방치하면 안 됩니다.
- 남은 농약은 폐농약수거함에 버리고, 가축분뇨는 인근 가축자원화시설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하천법」 제50조, 제50조의2, 제52조

-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할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에 이용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하루 8,000m³(약 8톤) 이상 사용하는 경우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사용 내역을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 관할 홍수통제소 연락처

한강 홍수통제소 : 02-590-9933, 9937

금강 홍수통제소 : 041-851-0522

낙동강 홍수통제소 : 051-603-3327, 3340

영산강 홍수통제소 : 062-600-8325, 8321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농업용수로 사용 시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정기적 수질검사, 시설·토지 원상복구 등 적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01 부정수급 사례 및 유형

가. 부정수급이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등을 분할하여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나. 부정수급 사례

위조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

거짓신청

양도세 감면, 농업인 지위 유지 등을 목적으로 농지 소유자가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부당신청·수령하는 경우

농지분할

많은 직불금 수령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도 직불금 신청 면적보다 당해연도 신청면적이 줄어든 경우

무단점유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 국공유지 등을 무단으로 점유 또는 경작하면서 직불금을 부당 신청·수령하는 경우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직불금 전액환수
형사고발(벌금)

다. 부정수급자 처분

- 부정수급자는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하고,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 또한 최대 8년 동안 기본형 직불금 등록이 제한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수령한 경우

구분	부정수급액	제재부가금	등록제한	
			소농직불	면적직불
등록	-	-	5년	3년
수령	전액환수	5배	8년	5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등을 분할한 경우

구분	부정수급액	제재부가금	등록제한
			소농·면적직불
등록	-	-	3년
수령	전액환수	3배	5년



- 마지막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라. 신고 포상금 제도

- 공익직불금의 부정수급 방지와 적발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지자체를 통해서 직불금 부정수급 방문신고가 가능하며, '1644-8778'로 전화를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농지를 분할한 자를 신고한 경우 해당 공익직불금 지급제한 금액의 30% 이내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직불금 등록자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조사·수거·열람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자
-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비치하지 아니한 자

02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농업인 실천사항

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합니다.

- 임대차 농지의 경우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하고, 부부간에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합니다.



나. 공익직불금 신청내용은 **본인이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 매도하여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신청하지 않고, 실제 경작하는 면적과 신청 면적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와 개발예정지 중 보상을 받은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도록 신청서를 확인합니다.



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하지 않습니다.

- 직불금 수령 금액을 늘리기 위해 농사를 짓지 않는 배우자 또는 자녀와 농지를 분할하여 각각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공익직불제 물어보기



A 농지전용을 거쳤지만 계속해서 농지를 농업에 이용했다면,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Q 농지전용을 거치면 지급 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므로, 전용 후 계속해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라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아 공익직불금 신청 전 전용 허가가 취소됐다면 지급 대상 농지로 인정됩니다.

A 바빠서 의무교육 참석이 어렵습니다.

Q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농업인 의무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농업인들의 교육 편리를 위해 운영 중인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등의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A 어머니가 고령으로 농사짓기가 어려워 대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신청한 공익직불금을 승계할 수 있나요? 현재 어머니와 같은 마을에 살지만, 주소는 다릅니다.

Q 불가능합니다. 공익직불금은 해당 농지 등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직전 1년 이상 주소가 같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만 승계할 수 있습니다.

A 신청자가 사망했다면 승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Q 사망 승계를 위한 구비서류를 갖추고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승계요건을 해당하는 자가 없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A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에 연금소득과 실업급여도 포함되나요?

Q 연금소득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만, 비과세소득인 실업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A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후계농업인 및 전업농업인이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나요?

Q 신규로 신청한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은 도시에 거주해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종전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후 탈락한 자,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위반한 농지만 제재를 받나요?

Q 부정수급자가 소유한 모든 농지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도 해당 농지에 대하여는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A 이웃농지와 꼭 경계가 있어야 하나요?

Q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해야 하기에 농지의 경계가 꼭 필요합니다. 논·밭의 경우 논둑이 있어야 하고, 밭의 경우 독·이랑·펜스 등으로 명확하게 경계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A 신청면적에 폐경을 포함하여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등록내용에 폐경이 포함되어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신청기간 중에는 언제나 변경 가능하고 등록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발급받은 후 14일 이내 이의신청하여 재등록(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A 부모님이 고령으로 글자를 모르시는데 영농일지를 작성하셔야 하나요?

Q 영농활동 준수사항으로 영농일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쉽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필수안내서 뒷장에 간편 그림영농일지를 첨부해 놓았으며, 농약·비료 등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도 같이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A 수확 후 밭에서 나오는 폐비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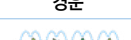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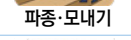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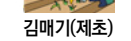
Q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병)을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매립하면 안 됩니다. 마을 주변의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에 처리하거나 공동 집하장이 없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일지 작성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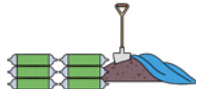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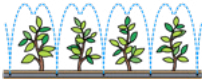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재배기간 동안 수행한 영농활동 내용을 기록해 주세요.

영농일지는 실경작자 확인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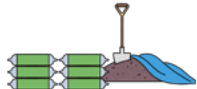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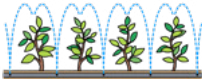
* 다양한 영농일지 양식은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gong) 자료실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영 농 일 지			
날 짜	4 월 3 일	5 월 13 일	6 월 30 일
 필지지번(농작물명)	직불리 125-1 (배추)	직불리 125-1 (배추)	직불리 125-1 (배추)
 농약명·사용량(봉/병)			
 비료명·사용량(포대)		엑시퀀 1봉 (진딧물약)	
 경운	☐ 경운	☐ 경운	☐ 경운
 관수(물주기)	☐ 관수	☐ 관수	☐ 관수
 파종·모내기	☒ 파종·모내기 600포기	☐ 파종·모내기	☐ 파종·모내기
 김매기(제초)	☐ 김매기	☐ 김매기	☐ 김매기
 수확	☐ 수확	☐ 수확	☒ 수확 400포기
 영수증 부착		진딧물약 구입 영수증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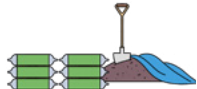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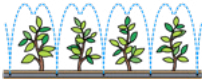
영 농 일 지

날 짜	월 일	월 일	월 일
 필지지번(농작물명)			
 농약명·사용량(봉/병)			
 비료명·사용량(포대)			
 경운	☐ 경운	☐ 경운	☐ 경운
 관수(물주기)	☐ 관수	☐ 관수	☐ 관수
 파종·모내기	☐ 파종·모내기	☐ 파종·모내기	☐ 파종·모내기
 김매기(제초)	☐ 김매기	☐ 김매기	☐ 김매기
 수확	☐ 수확	☐ 수확	☐ 수확
 영수증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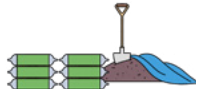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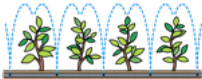
영 농 일 지

날 짜	월 일	월 일	월 일
 필지지번(농작물명)			
 농약명·사용량(봉/병)			
 비료명·사용량(포대)			
 경운	☐ 경운	☐ 경운	☐ 경운
 관수(물주기)	☐ 관수	☐ 관수	☐ 관수
 파종·모내기	☐ 파종·모내기	☐ 파종·모내기	☐ 파종·모내기
 김매기(제초)	☐ 김매기	☐ 김매기	☐ 김매기
 수확	☐ 수확	☐ 수확	☐ 수확
 영수증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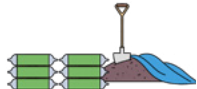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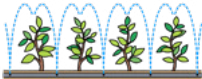
영 농 일 지

날 짜	월 일	월 일	월 일
 필지지번(농작물명)			
 농약명·사용량(봉/병)			
 비료명·사용량(포대)			
 경운	☐ 경운	☐ 경운	☐ 경운
 관수(물주기)	☐ 관수	☐ 관수	☐ 관수
 파종·모내기	☐ 파종·모내기	☐ 파종·모내기	☐ 파종·모내기
 김매기(제초)	☐ 김매기	☐ 김매기	☐ 김매기
 수확	☐ 수확	☐ 수확	☐ 수확
 영수증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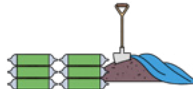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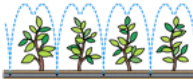
영 농 일 지

날 짜	월 일	월 일	월 일
 필지지번(농작물명)			
 농약명·사용량(봉/병)			
 비료명·사용량(포대)			
 경운	☐ 경운	☐ 경운	☐ 경운
 관수(물주기)	☐ 관수	☐ 관수	☐ 관수
 파종·모내기	☐ 파종·모내기	☐ 파종·모내기	☐ 파종·모내기
 김매기(제초)	☐ 김매기	☐ 김매기	☐ 김매기
 수확	☐ 수확	☐ 수확	☐ 수확
 영수증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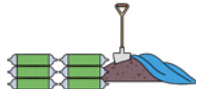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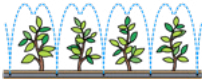
영 농 일 지

날 짜	월 일	월 일	월 일
 필지지번(농작물명)			
 농약명·사용량(봉/병)			
 비료명·사용량(포대)			
 경운	☐ 경운	☐ 경운	☐ 경운
 관수(물주기)	☐ 관수	☐ 관수	☐ 관수
 파종·모내기	☐ 파종·모내기	☐ 파종·모내기	☐ 파종·모내기
 김매기(제초)	☐ 김매기	☐ 김매기	☐ 김매기
 수확	☐ 수확	☐ 수확	☐ 수확
 영수증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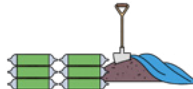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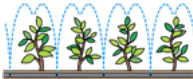
영 농 일 지

날 짜	월 일	월 일	월 일
 필지지번(농작물명)			
 농약명·사용량(봉/병)			
 비료명·사용량(포대)			
 경운	☐ 경운	☐ 경운	☐ 경운
 관수(물주기)	☐ 관수	☐ 관수	☐ 관수
 파종·모내기	☐ 파종·모내기	☐ 파종·모내기	☐ 파종·모내기
 김매기(제초)	☐ 김매기	☐ 김매기	☐ 김매기
 수확	☐ 수확	☐ 수확	☐ 수확
 영수증 부착			

영 농 일 지

날 짜	월 일	월 일	월 일
 필지지번(농작물명)			
 농약명·사용량(봉/병)			
 비료명·사용량(포대)			
 경운	☐ 경운	☐ 경운	☐ 경운
 관수(물주기)	☐ 관수	☐ 관수	☐ 관수
 파종·모내기	☐ 파종·모내기	☐ 파종·모내기	☐ 파종·모내기
 김매기(제초)	☐ 김매기	☐ 김매기	☐ 김매기
 수확	☐ 수확	☐ 수확	☐ 수확
 영수증 부착			

영 농 일 지

날 짜	월 일	월 일	월 일
 필지지번(농작물명)			
 농약명·사용량(봉/병)			
 비료명·사용량(포대)			
 경운	☐ 경운	☐ 경운	☐ 경운
 관수(물주기)	☐ 관수	☐ 관수	☐ 관수
 파종·모내기	☐ 파종·모내기	☐ 파종·모내기	☐ 파종·모내기
 김매기(제초)	☐ 김매기	☐ 김매기	☐ 김매기
 수확	☐ 수확	☐ 수확	☐ 수확
 영수증 부착			

공익직불금 자가진단표

해당하면 체크 ☒ 해주세요

직불금 신청 시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셨나요? ※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직불금 등록·수령하면 부정수급자가 됩니다.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세요.	☐
	농산물이 생산되는 면적만 신청하셨나요? ※ 창고, 주차장, 건축물, 묘지, 정원 등 폐경면적을 신청하면 10% 감액됩니다. ※ 농로,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퇴비장도 제외해 주세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
직불금 신청 후	휴경필지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하셨나요?	☐
	이웃 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설치를 하셨나요?	☐
	논농업의 경우 농지 주변의 용배수로를 유지 관리하셨나요?	☐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은 이수하셨나요? * 집합·온라인·간편·자동전화교육 등 본인이 해당되는 교육을 꼭 이수해 주세요.	☐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참여하셨나요? * 직불금 대상자는 마을공동체 활동에 꼭 참여해야 합니다.	☐
	영농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하셨나요? *영농·생활폐기물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매립하시면 안됩니다.	☐
	영농일지는 작성하고 있나요? *재배기간 동안 매월 1회이상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하셔야 합니다.	☐
	변경된 농업경영체 정보는 변경하셨나요? 농업경영정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하셔야 합니다.	☐
	농산물 안전 준수사항은 지키고 있나요? *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오면 출하제한 명령을 준수해 주세요	☐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공익직불제 안내서를
E-Book으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에 따른 농업인 교육을 위한 교재입니다.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시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2023년 9월 30일까지 보관해 주십시오.

공익직불제 문의처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공익직불제 문의상담콜센터 **1644-8778(내선 2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이름

주소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